건강검진 제3자 결과활용 동의서

• 일반건강검진(근로자 건강검진 일반, 특수 포함), 암검진

본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검진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며, 이에 검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.

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8조(검진 자료의 활용), 제19조(건강검진 사후관리), 제20조(조사, 연구사업 등)에 따라 검진 후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관리 정보 제공, 적절한 의료기관 안내, 건강검진의 홍보,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을 안내 받을수 있으며,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제5조(사업주의 의무) 제1항,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,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, 제131조(임시건강진단 명령 등), 제134조(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)에 따라 사후관리 등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문진자료 및 건강검진(진단) 결과,(인지기능장에 결과포함),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의 정보를 사업자 및 본원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□ 동의합니다.	□ 동의하지	않습니다.
□ 농의합니나.	□ 농의하시	않습니나

- 귀하의 검진결과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의료법」의 '비밀누설의 금지'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며,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 작성 후에도 동의자가 원하는 경우 동의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 활용기관: 보건소,국립암센터,질병관리청,공단,치매안심센터,근로자사업장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2년

년 월 일

수검자 성명 : _____ (서명)

생년월일 : _____



오 산 한 국 병 원